

러시아 조세제도 및 징수현황

1. 조세의 종류 및 구분

- 러시아의 조세는 크게 연방세(Federal Tax)와 지방세로 나뉘며, 지방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주정부 또는 자치공화국 등이 과세하는 지방세(Regional Tax)와 시·군세(Local Tax)로 구분됨
- 연방세(Federal Tax): 10개 세목
 - 부가가치세(Value Added Tax)
 - 특별소비세(Excise Duty)
 - 개인소득세(Tax on Income of Physical Persons)
 - 통합사회세(Unified Social Tax)
 - 법인이익세(Tax on the Profit of Organizations)
 - 천연자원세(Tax on the Extraction of Commercial Minerals)
 - 수자원세(Water Tax)
 - 야생동물·어업자원 이용부담금(Levies for the Use of Fauna and for the Use of Aquatic Biological Resources)
 - 각종 부담금(State Duty)
 - 상속·증여세(Inheritance or Gift Tax): '06.1.1 폐지 예정
- 지방세(Regional Tax): 3개 세목
 - 법인자산세(Tax on the Assets of Organizations)
 - 도박세(Gaming Tax)
 - 교통세(Transport Tax)
 - * 판매세(Sales Tax): '04.1.1 폐지
- 시·군세(Local Tax): 2개 세목
 - 토지세(Land Tax)
 - 개인재산세(Tax on the Property of Physical Persons)
 - * 광고세(Advertising Tax): '05.1.1 폐지

2. 조세 징수현황

- '04년에는 4조 5,064억 루블(약 1,550억 달러)의 조세가 징수되어 GDP대비 조세부담율은 26.9%였으며,

- 최근 고유가에 따라 세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('05.1~10월 32.4% 증가)
(단위: 억 루블, %)

구 분	2003	2004	증가율	2005년 1~10월	전년동기 대비증가율
조세징수총액(A)	36,367	45,063	23.9	46,852	32.4
GDP(B)	132,432	167,515	26.5	-	-
조세부담율(A/B)	27.4	26.9	-	-	-

- 세목별로는 '04년 통합사회세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, 통합사회세를 인하 등의 영향으로 '05년에는 법인이익세의 비중이 가장 커짐

(단위: 억 루블, %)

구 분	2003	2004	2005년 1~10월	비 중	전년동기 대비증가율
조세징수 총액	36,367	45,063	46,852	100.0	32.4
법인이익세	5,273	8,676	11,281	24.1	63.5
개인소득세	4,553	5,741	5,465	11.7	22.0
통합사회세	9,648	11,745	8,519	18.2	△3.2
부가가치세	6,191	7,490	9,111	19.4	47.1
특별소비세	3,467	2,405	1,987	4.2	20.3
천연자원세	3,983	5,822	7,524	16.1	75.9
기 타	3,252	3,184	2,965	6.3	△7.1

- 징수된 조세는 세목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에 배분되는 바, 금년 1~10월 기준 연방예산에 47.7%, 지방예산에 38.7%가 각각 배분됨

- 사회보장성 기금에 배분된 조세징수액의 13.6%는 모두 통합사회세 세수임
(단위: 억 루블, %)

구 분	2003	2004	비 중	2005년 1~10월	비 중
조세징수 총액	36,367	45,063	100.0	46,852	100.0
연방정부 예산	16,766	19,739	43.8	22,330	47.7
지방정부 예산	13,599	18,002	39.9	18,138	38.7
기 금 예 산	6,002	7,323	16.3	6,384	13.6

3. 주요 세목별 현황

가. 부가가치세(Value Added Tax)

- 개 요: 재화 및 용역의 매매·이전·수입 등에 부과되는 연방세(전액 연방예산 세입으로 납입됨)
- 세 율
 - 기본세율: 18% ('04.1.1부터 종전 20%에서 18%로 인하)
 - * Fradkov 총리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13%로 추가인하하자는 의견이나, Kudrin 재무부장관은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향후 전망 불투명
 - 10% 세율 적용대상: 식료품, 어린이 용품, 정기간행물, 서적, 의약품
 - 0% 세율 적용대상: 수출물품, 수출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직접 관련된 용역, 보세통과화물의 운송과 직접 관련된 용역, 외교관에게 제공된 재화·용역 등
 - 비과세 대상: 외국(법)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, 종교용품, 은행·보험 서비스 등
- 원천징수: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매입자로부터 원천징수 하나, 외국(법)인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원천징수

나. 특별소비세(Excise Duty)

- 개 요: 주류, 담배, 자동차, 유류에 부과되는 연방세(연방 및 지방예산에 납입됨)
- 세 율: 대부분 종량세이나 켈런의 경우 일부 종가세
 - 주 류: 알콜 도수 및 주종에 따라 1리터당 1.75 ~ 146.00루블
 - 담 배: 담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며,
 - 필터 있는 켈런의 경우 1,000개피당 65.00루블 + 8% (상한: 20%)
 - 자동차: 엔진 출력에 따라 0.75kW당 15.00 ~ 153.00루블
 - 유 류(휘발유, 디젤유 등): 유종에 따라 1톤당 1,080 ~ 3,627루블

다. 개인소득세(Tax on Income of Physical Persons)

- 개 요: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연방세(전액 지방예산 세입으로 납입됨)

○ 세 율

- 기본세율: 13% ('02.1.1부터 단일세율 적용)
- 비거주자(연간 183일 이하 러시아 거주자)의 소득: 30%
- 배당소득 및 모기지 담보채권 이자: 9% (모기지 담보채권은 '06년말까지)
- 경품소득: 35%
- 루블화 예금금리가 중앙은행 재할인율 초과시, 외화예금 금리가 9% 초과시:
한도 초과 이자의 35% (한도 이내의 이자는 면세)
- 만기 5년 미만 저축성 보험의 수익률이 중앙은행 재할인율 초과시:
초과수익의 35% (만기 5년이상 보험차익은 면세)
- 비은행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루블화 차입금리가 중앙은행 재할인율의 3/4 미만시, 외화차입 금리가 9% 미만시: 차익의 35%

라. 통합사회세(Unified Social Tax)

- 개 요: 고용주가 지급하는 임금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연방세 (연방예산, 연금기금, 사회보험기금, 의료보험기금에 납입됨)
 - * 납세의무자는 임금의 경우 고용주이며, 개인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임
 - * '01.1.1부터 각종 사회보장관련 조세가 통합사회세 하나로 통합됨
- 세 율: 역진세율('05.1.1부터 최고세율을 35.6%에서 26.0%로 인하하는 등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)
 - 고용주가 지급하는 임금
 - 연간 28만루블 이하: 26.0%
 - 연간 28만 ~ 60만루블: 72,800루블 + 초과액의 10.0%
 - 연간 60만루블 초과: 104,800루블 + 초과액의 2.0%
 - * 농업, 전통공예, 가내공업 고용주는 낮은 최고세율(20.0%) 적용
 - * '03.1.1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도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계없이 통합사회세를 부과

- 개인사업자의 소득
 - 연간 28만루블 이하: 10.0%
 - 연간 28만 ~ 60만루블: 28,000루블 + 초과액의 3.6%
 - 연간 60만루블 초과: 39,520루블 + 초과액의 2.0%
 - * 변호사는 낮은 최고세율(8.0%) 적용

○ 통합사회세 세수의 예산·기금별 배분비율

- 임금 과세구간별 합계 세율: 26.0% 10.0% 2.0%
- 연방예산 및 연금기금: 20.0% 7.9% 2.0%
- 사회보험기금: 3.2% 1.1% -
- 연방의료보험기금: 0.8% 0.5% -
- 지방의료보험기금: 2.0% 0.5% -

마. 법인이익세(Tax on the Profit of Organizations)

- 개 요: 법인의 이익에 부과되는 연방세(연방예산 및 지방예산에 납입됨)
- * 러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러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도 부과됨

○ 세 율

- 기본세율: 20 ~ 24%의 단일세율('02.1.1부터 종전 35%에서 24%로 인하)
 - 연방예산 납입분: 6.5%
 - 지방(주정부 또는 자치공화국)예산 납입분: 17.5%
 - (지방정부가 13.5 ~ 17.5% 범위내 인하가능)
- * '05.1.1 이전에는 연방예산 5%, 지방(주, 자치공화국) 예산 17%, 지방(시·군) 예산 2%의 세율로 배분하였고, 지방(주, 자치공화국)정부는 13 ~ 17% 범위내에서 인하 가능하였음
- 러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율: 20%
 - 국제운송 선박, 항공기, 기타 교통수단의 운영·임대소득: 10%

- 배당소득: 9% ('05.1.1부터 종전 6%에서 9%로 인상)
 - 외국법인이 취득한 배당소득: 15%
- 특정 중앙 및 지방정부 발행채권 이자소득: 15%

○ 손실발생시 향후 10년간 이연처리 가능 (과거 발생이익 상계는 불허)

사. 천연자원세(Tax on the Extraction of Commercial Minerals)

- 개 요: 상업적 천연자원 채취시 부과되는 연방세 (연방예산 및 지방예산에 납입됨)
- 세 율: 천연가스를 제외한 대부분 자원은 종가세가 적용되며, 원유는 한시적으로 종량세 적용
 - 원유: 16.5%
 - * '05.1.1 ~ '06.12.31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톤당 419루블의 종량세 적용 ('03년의 톤당 340루블 및 '04년의 톤당 347루블에서 인상됨)
 - 천연가스: 1,000입방미터당 135루블
 - 가스 콘덴세이트: 17.5%
 - 비철금속 광석, 천연 다이아몬드: 8.0%
 - 미네랄워터: 7.5%
 - 귀금속(금 제외) 원석: 6.5%
 - 비금속 광물자원, 역청탄, 금광석: 6.0%
 - 방사성 금속 원석, 천연 소금, 보크사이트: 5.5%
 - 철광석: 4.8%
 - 석탄, 토탄: 4.0%
 - 칼륨: 3.8%

※ 원유 수출관세(Export Duty)의 세율: 우랄산 원유가 기준 2개월마다 조정

- 배럴당 15달러 미만: 비과세
- 배럴당 15 ~ 20달러: 35%
- 배럴당 20 ~ 25달러: 1.75달러+ 초과분의 45%
- 배럴당 25달러 초과: 4달러+ 초과분의 65%

사. 수자원세(Water Tax)

- 개 요: 하천, 호수 및 해양의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채취하거나 수면을 이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연방세
- 세 율
 - 하천, 호수 지표수/지하수 채취: 지역별 1,000입방미터당 246 ~ 678루블
 - 해양 수자원 채취: 해양별 1,000입방미터당 4.32 ~ 14.88루블
 - 하천, 호수 수면 이용시: 지역별 1평방킬로미터당 연간 28.20 ~ 34.44루블
 - 해양 수면 이용시: 해양별 1평방킬로미터당 연간 14.04 ~ 49.80루블
 - 수력발전용 수자원 이용시: 지역별 1,000kW당 4.80 ~ 13.50루블
 - 목재운반용 하천, 호수, 해양 이용시: 목재 1,000입방미터 운반거리 100km당 1,183.2 ~ 1,705.2루블

아. 야생동물·어업자원 이용부담금(Levies for the Use of Fauna and for the Use of Aquatic Biological Resources)

- 개 요: 야생동물 및 어업자원 이용면허 취득 및 이용시 부과되는 연방세
- 세 율: 야생동물, 고래, 물개 등은 마리당, 어류는 톤당 정액세로 부과
 - 야생동물: 마리당 20루블(꿩 등 조류) ~ 15,000루블(들소)
 - 어 류: 톤당 20루블(발틱해 청어) ~ 100,000루블(극동의 King Crab)
 - 고래 등: 마리당 150루블(카스피해 바다표범) ~ 30,000루블(범고래)

자. 각종 부담금(State Duty)

- 개 요: 대부분 행정·사법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수수료 성격이나 세법에 규정되어 있음
 - 각급 법원에 소송접수시 납부하는 부담금
 - 등기소에 증명서류 신청시 납부하는 부담금
 - 여권(내국인), 출국비자(외국인) 발급시 납부하는 부담금
 - 전산 프로그램, 데이터베이스 국가 등록시 납부하는 부담금 등

차. 법인자산세(Tax on the Assets of Organizations)

- 개 요: 러시아 법인 또는 러시아에 고정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고정자산(동산 및 부동산)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
- 세 율: 과세표준의 2.2% 범위내에서 주, 자치공화국 별로 정함 ('04.1.1부터 종전 2.0%에서 2.2%로 인상)

카. 도박세 (Gaming Tax)

- 개 요: 도박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
- 세 율: 아래 범위내에서 주, 자치공화국 별로 정함
 - 게임 테이블: 1개당 매월 25,000 ~ 125,000루블
 - 게임 기계: 1대당 매월 1,500 ~ 7,500루블
 - 마권 배당률 표시기 또는 마권 판매창구: 1개당 매월 25,000 ~ 125,000루블

타. 교통세 (Transport Tax)

- 개 요: 자동차, 항공기, 선박 등 교통수단 보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
- 세 율: 아래 세액의 5배(1/5배) 범위내에서 주, 자치공화국별로 증감함
 - 자동차, 버스, 화물차: 종류 및 총 마력에 따라 연간 1마력당 5 ~ 30루블
 - 항공기, 헬리콥터: 종류에 따라 1마력당 20 ~ 25루블
 - 보터보트, 선박: 종류 및 총 마력에 따라 연간 1마력당 10 ~ 50루블

파. 토지세 (Land Tax)

- 개 요: 토지를 보유(소유 또는 무기한 이용)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시·군세
- 세 율: 아래 세율의 범위 내에서 시·군정부 별로 정함
 - 농지, 주택 및 공장용지, 원예용지, 축산용지: 0.3%
 - 기타 토지: 0.5%